

무역 및 관세제도

가. 개요

- 러시아는 원유, 가스 등 광물자원이 핵심적인 수출품목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장비(40%), 식품·농산물(20%), 화학제품, 의약품 등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루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경쟁력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네덜란드(8.4%), 독일(7.3%), 이탈리아(6.7%) 등이며, 수입상대국은 독일(14.4%), 벨로루시(8.6%), 우크라이나(8.1%) 등임.
- 2002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특히 철강, 화학 등의 미국과 EU 수출 시 반덤핑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방세계로부터 러시아의 시장개혁 성과를 인정받는 효과도 얻게 되었음.
- 현 푸틴 정부는 지난 수년간 대외무역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WTO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지난 1993년에도 WTO 가입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가입추진 노력은 2000년 푸틴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이제 WTO 가입문제는 핵심 정치목표인 동시에 러시아 국내에서도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경제이슈임.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을 계기로 서방세계와 우호적인 관계가 증진되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2004년 9월 주코프(Alexander Zhukov) 부총리는 2005년 WTO 가입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전문가들은 2006~07년 중 가입이 성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WTO 가입추진을 계기로 제반 제도 및 법규를 WTO 체제에 일치시키려는 국내 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고 있음. 관세, 물품표준, 인증,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법규가 새로이 정비되고 있음.

- 그러나 WTO와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지급,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한 이견 등임.
- 중국의 선례에서 보듯이, WTO 가입은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투자도 자원개발이나 국내시장 진출목적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비중은 매우 낮음.
- 러시아는 풍부한 양질의 저임노동력은 수출시장 확보동기의 투자자에게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나, 관료주의, 부패, 미흡한 재산권 보호장치 등 제도적 후진성은 여전히 러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관세 및 수입품 과세

- 수입품은 통상적으로 수입관세,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함.
- 러시아는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어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되며, 관세는 통관가액 또는 단위당 유로화 금액의 일정률 즉, 기초관세율(base import-tariff rate)로 부과됨.
- 러시아의 관세체제는 4개 분류대상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됨.
 - CIS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MFN) 지위를 가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기초관세율 적용. 약 130개 국가가 MFN 대우를 받고 있음.
 - 104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기초관세율의 75% 적용
 - 47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 면제. 정부령 제413호(1996. 4. 11)와 정부령 제414호(2000. 5. 25)는 해당국가 명단을 나열하고 있음.
 - 위 우대국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초관세율의 2배가 적용됨.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종전 7단계의 관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였음. 즉, 기초관세율은 5%, 10, 15%, 20% 등 4가지이나, 백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러시아의 평균관세율은 11% 수준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임.
- 관세율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관세율법 제5003-I호(1993. 5. 21)는 수출 및 수입의 관세가액 해설, 원산지 정의, 관세우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에 관한 가장 최근의 법령은 '대외경제활동 실현을 위해 적용되는 러시아 연방 관세율 및 품목 명명에 관한 결의서 제830호'(2001. 11. 30 제정, 2003. 6. 1 개정)인데, 여기에는 모든 품목 관세율이 나열되어 있음.
- CIS 국가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18%의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러시아 정부는 2006년까지 2~3%의 세율을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음. 현재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음. 한편, 2002년 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물품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주류, 담배, 자동차, 가솔린, 보석류 등임.

다. 수입제한

- 대 러시아 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공식적 수입규제제도(관세, 쿼터, 허가제 등)보다 비효율적인 수입행정, 부패 등이 지적되고 있음.

(1) 통관절차

- WTO 가입노력의 일환으로 통관제도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통관법이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통관절차 지연,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세관원들의 부패 등을 가장 심각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왔는데, 새 법령은 관세청(State Customs Committee, Gosstandart)과 기업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음. 통관처리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축소하고, 3일 초과 시 지연사유를 문서로 통보토록 변경하였음. 또, 새 법령은 세관행정의 모호성을 줄이고 뇌물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통관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였음.

- 일부 운송대기업들은 세관행정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변경된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세관 관계자들도 뇌물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세관관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새 법령이 러시아 관세제도의 개선을 가져왔으나, 이 법령은 개혁의 일부 성과이며 관세제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새 관세율법 68조에 의거 일련의 법제 정비¹⁾를 통해 2005년 3월 29일부터 러시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대외경제활동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하여 그에 상응한 통관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특별통관간소화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음.

(2) 표준 및 인증

- 러시아의 표준 및 인증제도도 수입자에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통관 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류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함.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함.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함.
- 표준 및 인정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 12. 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²⁾를 도입하였음.

1) 경제개발통상부령 제9호(2005. 1. 27) 및 연방관세청규정 제110-r호(2005. 3. 28).

(3) 수입허가(licences) · 수입쿼터(quotas) · 수입금지(ban)

- 러시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무역규제는 많으나, 공식적인 무역장벽은 주류, 무기류, 마약류 등 특정한 품종에 한정돼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러시아 정부는 주류의 수입, 제조, 판매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 특히, 코냑과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증류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주류에 대한 규제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제품(화장품류 등)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
-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발전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음.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운동용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허가 외에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1299호(1996. 11. 3)'로, 수입허가는 1회용 허가과 일반허가 등 2가지 종류가 있음.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수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음.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보석류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음.
- 수입쿼터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2002년에는 알코올 제품, 어류, 설탕 등에 적용된 바 있음. 또, 대외교역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전면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2년 3월 보건상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가공육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음.

2)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표준요건에 적합함을 표명하는 제도.

(4) 정부구매의 국산품 우대

- 공식적으로 정부구매 시 국산품에 부여하는 특혜는 거의 없으나, 정부구매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는 많이 있음.

(5) 사전예치요건

-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외환통제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1992. 10. 9 제정, 2004. 6. 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세청 합동명령 제91-I/01-11/28644호'(2000. 10. 4)임.
- 수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거래증(Import Transaction Passport)을 획득해야 하는데, 동 서류는 상세한 수입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관 시 수입자는 동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7) 국내대행자

- 통관법 172조에 따라 러시아 조직만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의 러시아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던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싼 편임.

(8) 필요서류

- 다음의 서류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수입계약서와 부속서류
- 제품사양
- 수입거래증
- 관세지급확인서
- 권리증서
- 법률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라. 수출세

- 여러 품목이 수출관세납부 대상인데, 여기에는 원유 및 가스 생산물, 금속 및 광물, 임산물, 주류, 수산물, 동물가죽, 귀금속 등이 포함됨.

- 관세율

- 원유: 톤당 69.9달러,
- 원유생산물: 톤당 45.4달러
- 정유제품: 원유 관세의 60%, 관세율을 정기적으로 조정됨.
- 가스: 2004년 1월 1일부터 30%가 적용됨.
- 금속, 귀금속 : 6.5%(다이아몬드는 수출관세 대상이 아님)
- 각종 원광석, 광물, 화학물질: 5% 또는 6.5%
- 증류주: 6.5%, 단, 보드카와 저알코올 주류는 관세대상이 아님.
- 어류, 갑각류: 5%
- 대두, 식용유 찌꺼기, 해바라기씨앗: 20%
- 겨자씨앗: 10%
- 임산물, 동물가죽 등: 다양한 관세율 적용

- 러시아 정부령 제865호(2003. 8. 6)는 수출관세 대상품목 및 관세율을 나열하고 있음. 한편, 수출품은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 납부세액은 환급됨.

마. 자유무역항 · 자유무역지대

- 일관성 있는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유경제지대는 존속하지 않고 있으나, 유일한 예외가 Kaliningrad 지역과 Megadan 지역임.
- Kaliningrad 지역의 특별경제지대에 관한 연방법 제13-FZ호(1996. 1. 22 제정, 2002. 12. 24 개정)와 Megadan 지역의 특별경제지대에 관한 연방법 제104-FZ호(1999. 5. 31 제정, 2002. 12. 24 개정)에 의거하여, 폴란드, 라트비아와 발틱해 사이에 위치한 Kaliningrad 지역과 러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Megadan 지역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이 각각 설치되었음.
- 양 지역의 투자자는 관세를 면제받으며, Megadan 지역 투자자는 2005년까지 연방조세를 50%만 납부하고 재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2006~2014년 중 면세혜택을 받음.
- 러시아 통관법은 역외조세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관세자유지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관세자유지대는 Sheremetyevo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1572호(1992. 12. 10)에 의거해 설립된 Sheremetyevo 국제공항 인근지역뿐임.

바. 수출제한

- 군대 및 무기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원유, 수산물, 야생동물, 암호수단 등 여러 품목이 수출허가 대상인데 수출허가 및 수출쿼터 적용품목은 정부법령 제854호에 나열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0년부터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제도를 도입했는데, 수출자는 수출에 포함된 모든 금융거래를 적시한 수출허가제(passport of export)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의 관계기관은 수출자의 은행계좌를 정밀 조사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수출자와 거래은행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참고> 수출허가제(passport of export)

■ 수출허가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내 수출자의 수출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외환제도로, 수출자가 발행 신청하고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승인하는 수출허가증으로 세관통관시 반드시 필요함.

- 수출허가제는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로 해외로의 자본이탈이 가속화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경화의 유출을 막기위해 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세관당국을 통해 수출상품 및 수출대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시행한 규제 조치임.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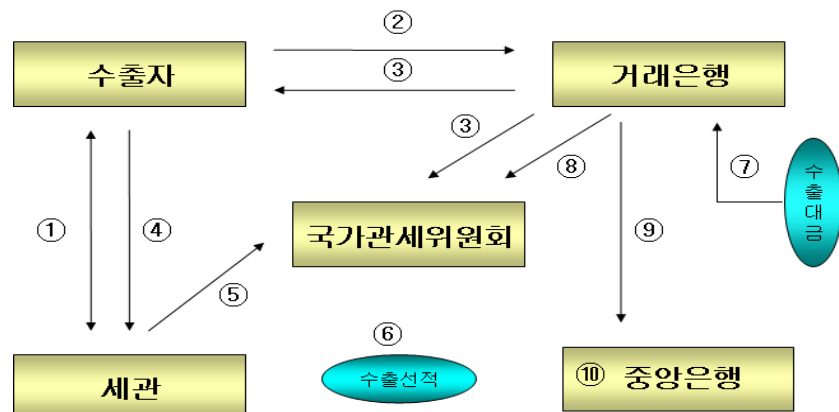
- 수출허가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내 용
1. 수출자	수출자명, 주소, 거주지등록번호, 등록일, 납세번호
2. 계약상대방(수입자)	수입자명, 수입국명 등
3. 주요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통화, 계약금액, 계약만료일, 특이사항 등
4.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금액, 허가유효기간
5. 기타사항	이전 허가번호, 타행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

- 거래은행은 상기 신청서에 수출자와 공동서명을 한 후 발행승인을 함
- 수출허가제의 주체는 수출자, 거래은행, 세관, 중앙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화물관세신고신청서(CCD)와 기타수출통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을 수출자에게 발급함.
 - ② 수출자는 거래은행에 passport of export 발행 신청(발행신청서 2부, 화물관세신고수리서 사본 1부, 수출계약서 원본, 사본 제출)
 - ③ 거래은행은 passport of export(2부) 승인후, 사본 1부를 수출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관세위원회에 제출(관세위원회 정보센터에서는 수출대금영수에 대한 정보 등록)
 - ④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세관에 passport of export 사본 1부 제출
 - ⑤ 세관은 수출통관 후 관세위원회에 통지
 - ⑥ 수출선적
 - ⑦ 수출대금이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⑧ 거래은행은 동 입금내역 파일관리 및 입금통지서(Bank control statement) 작성후 관세위원회에 통지
- ⑨ 거래은행은 수출거래내역보고서 작성하여 중앙은행 담당부서에 제출
- ⑩ 중앙은행은 수출거래내역 취합후 중앙은행 외환감독부서에 보고

<그림 IV-3> 수출허가제 절차



사. 수출보험 · 수출신용

- 러시아 정부는 Vneshtorgbank³⁾를 통해 대외거래 대행과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동 은행에 단기 또는 중기 수출금융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Vneshtorgbank는 금융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간 무역 협정이나 국가지시에 의한 수출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고 있음.

3) 정부가 99% 지분을 소유한 대외거래 전문은행임.